[서식 예] 아파트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(분양자를 상대로) 🖁

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주택개량재개발조합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대표자 조합장 ◈◈◈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아파트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원고와 소외 김��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소외 김◈◈와의 사이에 소외 김◈◈가 20○○. ○. ○. 소외 이◈◈로부터 매수한 피고 분양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아파트)에 관한 수분양권을 금 ○억 ○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금 ○천만원을 지급하고 위 소외 김◈◈, 소외 이◈◈와의 매매계약시에 승계하기로 한 분양대금 중 연체료를 포함한 중도금 및 잔금조로 피고에게 20○○. ○. ○. ○. 금 ○○○원을 직접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 ○○○원은 20○○. ○. ○○.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

두 지급하였습니다.



- 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속해 있는 아파트단지는 20○○. ○.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아직 미등기상태인바, 소외 김◈◈는 피고를 상대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원고에게 매도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양권을 이중양도 하려는 기미가 있어 원고는 불안한 나머지 소외 김◈◈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둔 바 있습니다.
- 3.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김◈◈로부터 분양계약서상의 모든 지위와 권리를 양도받았으며,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유를 들어 수분양자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 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을 양수한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해 원고가 20○○. ○. ○. 소외 김◈◈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아파트매매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분양계약서

1. 갑 제3호증 확인서

1. 갑 제4호증 분양대금완납영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	각 2통
1. 법인등기부등본	1통
1. 소장부본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
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○○○○.○○m² 지상 ○○아파트 제○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○층 아파트 중 ○층 ○호

건물의 표시

전용면적: 132.960 m²

공용면적: 33.297 m²

공급면적:166.257㎡

지하주차장 면적: 32.558m²

계약면적: 198.815m²

대지의 표시

공유면적: 53.861㎡. 끝.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『소멸시효일람표 MAN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 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 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